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6

제출일자 : '98. 4.
제출자 : 제천시장

□ 제안사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감면시 감면대상 차량의 확대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의 경우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 ⇒ ①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②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③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④이륜자동차중 감면대상자가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차량소유여부 판단사항 보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종

-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던 규정에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함

※ 위의 내용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기존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원부상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임

□ 개정근거

- 내무부 세제 13400 - 37('98. 2. 12)호 및 도세정 13400 - 238('98. 3. 4)호와 관련임

□ 개정조례안 : 불임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참조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p> |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 현 행 | 개 정 안 |
|--|--|
| <u>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u> <u>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u> <u>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u> <u>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u> <u>지 아니하다.</u> | <u>4. 이륜자동차</u> |
| <u>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u> <u>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u> <u>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u> <u>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u> <u>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u> | |
| <u>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u> <u>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u> <u>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u> <u>동차</u> | |
| <u><신 설></u> | <u>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u>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u> <u>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 <u>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u> <u>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u> <u>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u> <u>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u> <u>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u> <u>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u> |

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

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

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 현 행 | 개 정 안 |
|--|--|
| <u>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u>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
| <u><신 설></u> |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
| <u><신 설></u> |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 <u><신 설></u> |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 <u><신 설></u> | 4. 이륜자동차 |
| <u>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u>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p><u>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p>1. ~ 3. (생략)</p> <p><u><신 설></u></p> |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u> <u>수출된 자동차</u></p> |